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13 November 2017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 Tax Reform –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releases tax reform bills](#)

미국: 세법 개정안 발표

미국 연방 하원 세입세출위원회(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는 11월 2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개정안 중 이전가격 관련 유의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전가격 관련 주요 개정

- Section 3001 – 법인세율 20%로 인하
- Section 3301 – 이자비용 공제 한도를 조정과세소득(Adjusted taxable income)의 30%까지로 제한
- Section 3801- 이연보상(예. 스톡옵션 등)에 대하여 실현하거나 행사하였을 때가 아닌 권리를 획득했을 때에도 과세 가능
- Section 3802 – 과도한 소득이란 이유로 1백만 USD까지만 허용되었던 성과 기준 소득공제 제한 폐지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백승록 상무

(Tel: 02-2112-0982)

- Section 4001 – 10% 이상 지분 보유 국외기업으로부터 미국기업이 배당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비과세
- Section 4301 – 미국기업의 국외자회사에서 'High return'이 발생한 경우, 이에 10% 세율 부과('High return'이란 통상적 이익(Routine return)을 초과하는 잔여이익을 의미하며, 통상적 이익 = 7% + 연방 단기이자율)
- Section 4302 – 미국기업의 이자비용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제한, 그룹의 전세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X EBITDA 기준 그룹 내 미국 비중 X 110%, 이자비용 공제는 Section 3301과 Section 4302 중 작은 것으로 제한
- Section 4303 – 국외특수관계인이 미국기업으로부터 수취한 이자외 금액 (공제가능, 매출원가 처리 또는 자산 관련 감가상각·감모상각 처리)에 대하여 미국 세액납부를 조건으로 한 미국과세대상소득(US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ECI")으로 보고하지 않는 경우, 미국기업의 국외특수관계인으로 이자 외 지급에 대하여 20% 특별세(Excise tax) 부과, ECI로 처리하는 경우, 공제액은 관련 제품군에 대한 그룹 연결재무제표 기준 이익률에 근거하여 산출
Section 4303은 미국 또는 해외 기반 다국적기업 그룹 소속의 미국 소재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 연간 1억 USD 이상 지급하는 경우 적용, Section 4303은 제공용역에 마진이 가산되지 않거나(원가 제공) 특정 종류의 재화거래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이전가격 관련 주요 영향

- 발표된 개정안은 이전가격 분석과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Tax Planning 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변화 초래, 개정안이 조세체계의 복잡다단성을 더하므로 그 어느 때보다 조세를 고려한 가치사슬(Value Chain) 관리가 중요
- Section 4303은 가치창출 장소에 관계없이 미국 매출 관련 발생소득에 대해서 미국이 과세하겠다는 목적지세 또는 소비지기반세(Destination-based tax) 기반 조세정책의 강화
- Section 4303 관련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많은 기업들은 20% 소비세 전액납부 대신 ECI 적용을 통한 공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 ECI 규정은 매우 복잡하며, 제품군 이익률 결정에 대하여 미규정된 부분들이 존재, 따라서 이전가격 전문가의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이자비용 공제한도가 개정되면 파이낸싱 구조와 요율에 대한 점검 필요

- Section 3801과 3082는 비용에 근거한 이전가격 분석에 영향 예상

Japan Proposes Expanded Permanent Establishment Definition

(Bloomberg BNA TP Report Vol.26, No.14, p587)

일본: 고정사업장 관련 세법 개정안 발표

일본 정부는 고정사업장의 정의에 대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종속 대리인(Dependent agent)을 포함한 고정사업장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다국적기업의 일본 내 중개인 거래를 고정사업장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은 외국기업이 일본 내 등록된 지점을 설치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일본 내 계약 관련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존재할 시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내용은 일본 국내법을 OECD의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조세 전문가들은 일본 내 활동 중인 다국적기업이 중개인 또는 대리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 관련 조세전략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명확히 독립적임을 보일 수 있게 기능 및 위험을 조정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일부터 일본은 AOA(the Authorized OECD Approach to calculate the profits attributable to Permanent Establishment)를 도입하였으며, 일본 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은 AOA에 근거한 이익배분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개정된 고정사업장 규정 관련 상세한 이익배분 방식에 대한 가이드는 발표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중과세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2018년 2월쯤 상세 발표될 것이며, 2018년 3월 말 정식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2018년 4월 1일 또는 2019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India: Final rules on country-by-country reporting, Master file requirements

인도: 국가별 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및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최종법안 발표

인도 정부, 국세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2017년 10월 6일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 보고서 서식 및 관련 개정안 초안을 공개한 후 2017년 10월 16일까지 관계자들로부터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인도 국세청은 상기 자문기간을 거쳐 2017년 10월 31일, 최종법안(CBTD Notification No. S.O.

3497(E))을 발표하였습니다.

Rule 10DA 와 Rule 10DB가 Income-tax Rule, 1962("소득세법 시행령")에 추가되었으며 서식 3CEAA, 3CEAB, 3CEAC, 3CEAD, 3CEAE 가 동 시행령에 새로 소개되었습니다.

Rules 10DA는 제출관련 기준, 기한, 규정 및 절차 등 통합기업보고서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서 관련 정보는 서식 3CEBA 및 3CEBE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Rule 10DB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절차 및 세부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 및 세부사항들은 서식 3CEAC, 3CEAD, 3CEAE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 Rule 10DA

제출요건 및 제출기한

Rule 10DA(Sub Rules 1~8)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삽입되었으며 **Sub Rule 1**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요건을, **Sub Rule 2**는 동 보고서의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준 | 제출요건 (Sub Rule 1) | 제출기한 (Sub Rule 2) |
|---|--|---|
| 1. 다국적기업의 해당 회계연도의 연 결매출액이 다음을 초과할 경우; | INR 50억 (약 860억원) | <u>FY 2016-17*의 경우</u> |
| 그리고 | | 2018년 3월 31일까지 작성 |
| 2.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인도 납세자의 A. 국외특수관계거래 금액 총 합 계가 다음을 초과하거나; B.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무형자 산의 매입, 판매, 이전, 사용 등 의 거래 금액의 경우, 다음을 초과할 경우 | A. INR 5억 (약 86억원) B. INR 1억 (약 17억원) | <u>그 이후의 회계연도</u>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 *2016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2017년 3월 31일에 종료하는 사업연도 **인도 내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4월1일에 시작하여 3월 31일에 종료하는 기간이며 이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은 11월 30일임. |

상기 Rule은 다국적기업의 연결매출 외화표시액을 해당 사업연도 말일 기준 전신환매입율(telegraphic transfer buying rate)을 적용하여 INR 단위로 환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신환매입율이란 Rule 26 상 정의를 따릅니다.

통합기업보고서 세부내용 제출의무는 상기 표상 두 가지 제출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서식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서식 3CEAA:** 본 Rule은 통합기업보고서를 서식 3CEAA에 따라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식은 다음과 같이 A파트와 B파트로 구분됩니다.

- A 파트는 상기 두 가지 제출요건의 총족여부에 상관없이 다국적 그룹의 모든 인도 소재법인이 작성대상입니다. 해당 파트는 그룹명, 인도에 소재하는 법인의 수와 그 상호명, 주소, 소득세번호(PAN) 등 일반적인 정보를 포함합니다.
- B 파트는 상기 표의 두 가지 제출요건을 총족하는 법인만이 작성대상입니다.
- **서식 3CEBE:** 다국적그룹의 인도 소재법인이 하나 이상인 경우, 인도 소재법인 중 하나를 지정하여 서식 3CEAA를 대표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A 파트만 혹은 A, B 파트 모두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국적기업에 의해 지정된 인도 소재법인만 서식 3CEAA를 작성하며 해당 법인이 서식 3CEAA를 제출한다는 사실을 서식 3CEAB에 기재하여 소득세 심의관(Director General of Income Tax)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인도 내 소재법인이 하나인 경우, 서식 3CEAB 작성의무는 없습니다. 인도 소재법인이 2개 이상인 경우, 다국적기업은 하나의 인도 소재법인을 지정하여 서식 3CEAA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출의무 위임사실을 3CEAB에 기술하여 서식 3CEAA 제출기한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FY2016-17 회계연도의 경우, 3CEAB 제출기한은 2018년 3월 1일입니다.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과태료조항

서식 3CEAA(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기한까지 미제출할 경우, 인도 소득세법 Section 271AA에 따라 과태료 INR 50만(약860만원) 이 부과됩니다.

통합기업보고서의 주요 내용

Rule 10DA의 Sub Rule 1은 통합기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및 부속서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Rules 10DA에 명시된 통합기업보고서 관련 규정은 OECD Action 13 권고안과 유사하지만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 Rule 10DA | Action Plan 13 |
|---|--|
| 그룹의 매출 혹은 자산 혹은 수익의 <u>최소 10%</u> 를 차지하는 자회사에 대한 기능, 위험 및 자산분석 | 그룹 내 법인이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는 기능분석; 주요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운용자산 |
| 자금거래규모 기준, <u>상위 10개 제3자 대여자</u> 의 이름, 주소를 포함한 그룹의 자금거래 약정에 대한 상세설명 | 제3자 대여자와의 주요 자금거래 내역을 포함한 그룹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 무형자산 개발 및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그룹 내 법인의 목록(주소 포함) | BEPS Action 13는 관련내용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국가별보고서 – Rule 10DB

제출요건 및 제출기한

Rule 10DB(Sub Rule 1~8) 는 국가별보고서 제출 관련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국가별보고서 제출요건은 인도 소득세법의 Section 286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국가별보고서 규정은 OECD Action 13 상의 요구/권고사항들을 따르고 있으며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요건:** Sub Rule 6은 다국적 기업의 연결매출액이 INR 550억(약 9,4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국가별 보고서의 제출 및 신고(notification) 의무가 발생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OECD에서 제시한 기준과 크게 일치하며 다국적기업의 직접 회계연도 연결매출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FY2016-17 회계연도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준 2017년 10월 25일에서 2018년 3월 31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상기 Rule은 다국적기업의 연결재무제표상 외화표시 연결매출액을 직접 회계연도 말일 기준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하여 INR 단위로 환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 제출요건을 총괄하는 법인은 크게 아래 3가지 경우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 구분 | 제출/통지 의무 | 기한 |
|---|---|---|---|
| 1 | 인도 거주법인인 모회사 혹은 모회사가 지정한 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 ("alternate reporting entity") | (매 회계연도에 대해) 서식3CEAD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것. 본 서식에서 요구되는 내용은 Action Plan 13 상의 내용과 유사함. | <u>FY 2016-17 의 경우</u> 2018년 3월 31일까지* <u>그 이후의 회계연도</u>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작성 |
| 2 |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인도 소재 자회사 | 서식 3CEAC에 따라 소득세심의관에게 국가별보고서 사전신고(notification) 인도 소재 법인은 본 서식을 통해 아래 사항을 신고해야 함. - 본 법인이 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인지의 여부 - 최종 모회사 혹은 국가별보고서 제출법인에 대한 상세정보 및 해당법인의 소재지 | 국가별보고서(3CEAD) 제출기한으로부터 2개월 전 까지 FY 2016-17 회계연도에 대한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이 2018년 3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서식 3CEAC 제출기한은 2018년 1월 31일임. |
| 3 | 해외에 소재한 모회사의 인도 소재 자회사 - 특수한 경우(예: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 미체결 혹은 시스템 상의 오류 발생 시) | (매 회계연도에 대해) 서식 3CEAD에 따라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할 것. 인도 소재 법인이 하나 이상인 경우, 다국적 기업은 그 중 하나의 법인을 지정하여 서식 3CEAD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해당 지정법인은 서식 3CEAE를 통해 따라 소득세 심의관 | <u>국가별보고서(서식 3CEAD) 제출기한-</u> 위와 동일* <u>서식 3CEAE에 따른 국가별보고서 제출 사전신고-</u> |

| | | |
|--|-----------------------------|----------------------------|
| | 에게 서식 3CEAD의 제출주체를 사전신고해야함. | 이에 대한 제출기한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

국가별보고서 관련 과태료조항

국가별보고서를 오제출 혹은 미제출하는 경우, 인도 소득세법 Section 271GB에 의거하여 대해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특정 조건에 한하여) 국가별보고서의 특정 부분을 잘못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INR 50만(약 860만원) 부과
- 제출법인이 국가별보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 적용;
 - 미제출 후 경과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일당 INR 5천(약 8만 6천원)
 - 미제출 후 경과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일당 INR 1.5만(약 25만원)
 -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미제출하는 경우: 1일당 INR 5만(약 86만원)

KPMG 의견

본 최종법안에는 기존 국가별보고서 및 통합기업보고서 법안초안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주요 변경사항들이 반영되었습니다.

- 최종법안상 통합기업보고서 규정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모든 법인(all entities)** 목록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기존 초안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모든 운영법인(all operating entities)** 목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본 최종법안은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요건 판정 시 사업연도 말일 기준 전신환매입율을 적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상기 Rules에 명시된 모든 서식들은 소득세법 Section 140에 따라 소득세 신고를 확인할 수 있는 담당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합니다.

추가 지침이 필요한 사항들

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제출요건,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아직 불명확한 점들이 존재합니다. 초안에 대한 자문기간 동안 많은 건의들이 이루어졌으나, 아직 아래 사항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가별보고서 자동교환협정 미체결 혹은 시스템 오류 발생 시, 인도 소재 자회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국가별보고서 제출주체의 사전신고(서식 3CEAE) 제출기한이 아직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이며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 2 달전까지 제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점 및 외국법인의 인도 내 고정사업장에 대한 통합기업보고서 규정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section 92D(1)와 Rule 10DA의 sub-rule(1)에서는 다국적기업의 법인들(consituent entities)라고 명시한 반면, Rule 10DA의 sub-rule(4)는 “인도 거주법인”(constituent entities resident in India)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인도 거주법인”(resident in India)이라는 표현이 비일관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통합기업보고서 규정 적용에 혼란이 야기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합기업보고서의 두 번째 제출요건(국외특수관계거래 금액의 합계가 INR 5억(약 86억원)/무형자산거래의 경우 INR 1억(약17억원)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회계연도’ (Section 286에 정의된 accounting year)에 대한 정의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합니다. 외국 소재 모회사의 자회사 법인들의 경우, Section 286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해외 모회사 소재국가의 회계연도를 따라갑니다. 인도의 사업연도가 4월에서 3월까지의 기간임을 고려할 때, 인도소재 자회사 법인의 국외특수관계거래 금액을 다른 기준에(역년 혹은 모회사가 적용하는 회계연도 기준) 근거하여 합산할 경우 이에 대한 challenge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ajority of EU countries backing digital tax “global solution”: ([Bloomberg BNA TP Report Vol.26, No.14, p572](#))

주요 EU 국가들의 디지털세(□) 글로벌 합의안 도입 지지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한 과세방안을 골자로 한 EU 차원의 글로벌 합의안(“global solution”) 채택을 통해 현재 OECD에서 진행 중인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2월 합의안

EU 재무장관들은 12월 초까지 디지털세(소위 구글세) 법안의 최종 확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의 합의내용은 2018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디지털세 업무협의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의 주도 아래 EU가 조속한 균등세(“equalization tax”) 도입을 통해 페이스북,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의 기업들의 납세액을 증가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세란 비거주법인이 제공한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원천과세, 디지털 광고수의 과세 등 IT 대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부담률을 높이기 위한 세제를 의미합니다. 균등세는 IT 대기업이 유럽 본사를 두고 있는 아일랜드 등에 내는 세금과 별도로 유럽 각 국가에서 발생한 실제매출에 기반하여 추가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으로서 프랑스의 주도로 주요 EU 국가들이 입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2월 EU 재무장관 합의안은 2018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2018년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세 관련법 조안의 기초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안 작성과정의 일환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27일 공공자문을 개시하여 디지털 기업들의 납세액 증가를 위한 다양한 디지털세 정책 관련 피드백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유럽집행 위원회는 향후 도전과제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2단계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선별적/임시적인 방안(1단계)을 우선 적용한 후 포괄적/장기적인 방안(2단계)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향후 선택방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상기 공공자문 청취대상인 단기적 방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위 "균등세"로 지칭되는 매출액에 근거한 세제안;
- 상당한 경제규모의 비거주법인이 원격으로 수행하는 특정 디지털 용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에 대한 세제안(예: 온라인 광고 매출);
- 가치창출 프로세스의 초기단계(예: 인적 데이터 및 기타 데이터 수집)에 적용되는 세제안;

상기 공공자문 청취대상인 장기적 방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정사업장 및 이익귀속주체 관련 추가규정을 포함한 기존 법인세제 개정안;
- 디지털 사업활동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고정사업장 및 이익귀속 주체에 대한 EU의 자체법안;
- 소비자 거주지역 기준으로 조세관할권이 성립되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입각한 EU 법인세 개정안
- 디지털 기업들의 국가별 발생매출액의 비중을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전세계 이익 중 국가별 귀속분에 대해 합산과세("unitary tax")를 적용하는 안
- 목적지 세율을 적용하는 거주지국 과세표준(resident tax base): 현행 세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소득 신고 및 과세는 사업장 소재지국 기준으로 하되, 세율은 국가별 발생매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한 가중평균세율을 적용

[Back to top](#)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app

